

##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### 1. 계약목적

- 1)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정신적,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**2. 계약기간** -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(계약기간)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, 장기요양 1, 2, 3~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.

**3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** -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,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. 만일,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,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,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.

### 4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1)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,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,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(본인부담금, 비급여)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,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.

### 5.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- 1)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  -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  -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
- 2) 입소자 또는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.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, 입소자의 심신상태,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, 관리한다.
- 3)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  -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(산소공급, 췌선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
  -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 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)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### 6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3)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- 4)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### 7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)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)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·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- 5)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# ■ 종사자 근무 체계

## 1.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

| 시설장  |    | 사무국장 |    | 사회복지사 |    | 간호(조무)사 |    | 물리(작업)치료사 |    | 사무원  |    | 요양보호사 |    | 위생원  |    | 조리원 |
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|
| 법정인력 | 현원 | 법정인력 | 현원 | 법정인력  | 현원 | 법정인력    | 현원 | 법정인력      | 현원 | 법정인력 | 현원 | 법정인력  | 현원 | 법정인력 | 현원 | 위탁  |
| 1    | 1  | 1    | 1  | 1     | 1  | 3       | 4  | 1         | 1  | 1    | 1  | 34    | 35 | 1    | 1  |     |

## 2. 주,야간/평,휴일 종사자 인력

| 평 일 |     | 휴 일 |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주 간 | 야 간 | 주 간 | 야 간 |
| 22명 | 8명  | 17명 | 8명  |

# ■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: 시설급여(1일기준)

| 요 양 등 급    | 1 등 급  | 2 등 급  | 3·4 등 급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1 일당       | 90,450 | 83,910 | 79,240  |
| 본인부담금(20%) | 18,090 | 16,790 | 15,850  |
| 본인부담금(12%) | 10,860 | 10,070 | 9,510   |
| 본인부담금(8%)  | 7,240  | 6,720  | 6,340   |

# ■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식 재료비    | 일 반 식 | 끼니당 : 3,800원/간식비: 1,100원 | 1일 12,500원    |
| 이미용비,교통비 |       | 상황발생시 실비 적용              | 이,미용 시설 기본 제공 |
| 상급 침실료   |       | 필요시 적용                   | 필요시 적용        |

■ 시설의 규모, 설비

| 시설규모 |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
| 5층면적 | 1,537.08㎡ | 공유면적 | 530.168㎡ | 소유형태 | 자 가 |

| 시설현황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침실   | 특 별 침 | 사무실 | 간호실 | 물 리 치료실 | 자 원 봉사실 | 상담실 | 프 로 그램실 | 직 원 휴게실 | 식당 및 조리실 | 화장실 | 세면장 및 목욕실 | 세탁장 및 건조장 |
| 30   | 1     | 1   | 1   | 1       | 1       | 1   | 2       | 2       | 1        | 4   | 1         | 1         |

■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화 재 보 험            | DB손해보험<br>“프로미라이프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”<br>(2024년12월16일 ~ 2027년12월16일(3년)) |
| 배상책임보험<br>(영업,전문인) |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<br>(2024년05월07일부터 ~ 2025년05월07일(1년))                  |